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0가단51966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구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7/21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5,816,0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816,0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서 'C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172,916원과 그중 70,223,504원에 대하여 200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35,816,062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2017. 11. 2.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그날 C과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자신의 상속지분인 7/21 외에 C의 상속지분 전부인 7/21까지 포함하여 14/21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각 그들의 상속지분만큼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8. 3. 9. 이 사건 부동산 중 14/21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이와 같은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전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보전채권은 원고가 (주) F로부터 양수한 C에 대한 보증채권으로서 그 내용은 주채무자 D의 F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C이 보증을 하였다는 것인바, 실제로 C은 보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인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로서 C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C을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증거에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7/21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피고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C에게 프랑스에 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 C이 프랑스에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겨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사해행위 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액이 135,816,062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35,816,0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35,816,0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홍도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84.6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24988.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22913.2㎡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7901.4분의 50.3084

